

저소득 주민을 위한

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

지원대상자가 **2억원 이하**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
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**최대 30만원**까지 지원
(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, 2020년 계약은 1억이하 거래만 적용)



지원대상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접수처 시·군청 부동산담당 부서

- 구비서류**
-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| ②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|
|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| ④ 주민등록표 등본(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) |
| ⑤ 매매(임대차)계약서 사본 |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|
| ⑦ 통장사본 | |

※ 경기도홈페이지, 경기부동산포털 등에서 구비서류1,2번 다운로드 가능

문의처 경기도콜센터 ☎ 031-120